

도시관리계획(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과 및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1월 10일

대구광역시 달성군



1. 도시관리계획(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

가. 교통시설(도로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 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3	옥150	6	국지	430	중로2-179 강림리 1074	소로2-논42 금포리 2389	일반	-	91.12.3 (경고 제438호)	
변경	소로	3	옥150	6	국지	433	중로2-179 강림리 1074	소로2-논42 금포리 2389	일반	-	91.12.3 (경고 제438호)	

나. 교통시설(도로) 변경결정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3-옥150호선	소로3-옥150호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형변경 - B = 6m (변경없음) L = 430m → 433m (증 3m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활한 선형변경 및 불합리한 구간을 변경하고자 함

2. 관계도면 :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(게재 생략)